

2014

연구보고서-8

I S S U E P A P E R

다문화가족의 초국가적 가족연계망 현황과 미래 전망

수행과제명 · 다문화가족의 초국가적 가족 연계망과 정책적 시사점
과제책임자 · 김이선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다문화가족의 초국가적 가족연계망 현황과 미래 전망*

수행 과제명 ☒ 다문화가족의 초국가적 가족 연계망과 정책적 시사점

과제 책임자 ☒ 김이선 연구위원

☎ Tel: 02-3156-7158

☎ e-mail: yskim@kwdimail.re.kr

요약

다문화가족에게 있어, 국경을 넘어 형성된 가족 연계망은 가족관계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양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의제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본격화되지 못함. 이에 다문화가족이 결혼이민자 원가족과 맺고 있는 관계를 중심으로 초국가적 가족 연계망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초국가적 가족으로서 다문화가족의 성격을 규명하고 미래를 전망하고자 함. 또한 초국가적 가족 연계망과 관련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국내 정책 차원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의제와 쟁점을 도출함으로써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김이선·이아름·황정미(2014). 다문화가족의 초국가적 가족 연계망과 정책적 시사점.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연구 배경

- 이민자와 그 가족원의 삶은 목적지사회와 출신사회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연계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 결혼이민자, 일반귀화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의 현재와 미래 역시 한국사회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민자 출신사회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이 이민자 개인은 물론 가족원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민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가족 연계망과 이를 통한 인간과 유무형의 자원의 이동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송금이나 연쇄이주(chain migration) 등 몇몇 문제에 한정되어 접근되어 옴. 그러나 이제 초국가적 연계망은 송금을 하거나 연쇄이주를 하는 특정 시기에만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정서, 경제적 자원, 돌봄 기능 등의 상시적 흐름을 통해 가족의 일상을 구성하고 사회 구성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됨.
- 나아가 가족의 미래 역시 초국가적 연계망 속에서 짜여질 것으로 전망됨.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결혼이민자·귀화자 중 45.2%, 한국인 배우자 중 41.2%가 향후 자녀를 결혼이민자·귀화자 모국에 유학시킬 의향이 있으며 자녀의 경우에도 31.7%가 외국출신 부모 모국 유학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다문화가족에게 있어서는 이민자를 중심으로 국경을 넘어 형성된 연계망이 가족관계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양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초국가적 가족 연계망과 관련된 사회적 의제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본격화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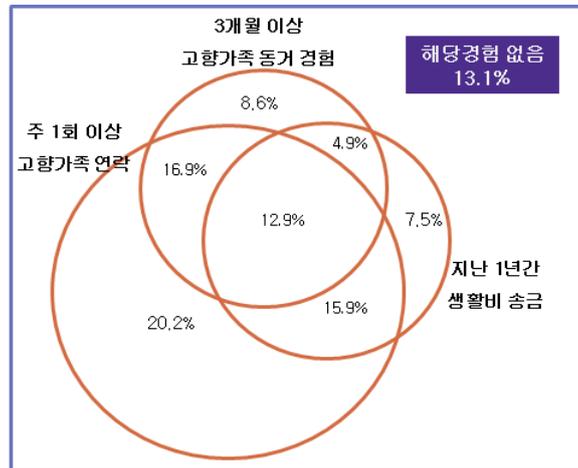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여성결혼이민자 534명, 한국인 남편 208명 대상),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인터뷰 결과 분석을 통해 가족이 결혼이민자 원가족과 맺고 있는 관계를 중심으로 초국가적 가족 연계망 실태를 파악하고 초국가적 가족으로서 다문화 가족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함. 또한 초국가적 가족 연계망과 관련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국내 정책 차원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의제와 쟁점을 도출함으로써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연구 결과

- 다문화가족의 초국가적 가족연계망 실태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와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상당수 다문화가족이 국경을 넘어 가족원이 이동하고 경제적 자원과 정서가 교류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초국가적 가족(transnational family)’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 중 이주 이후 고향가족이 국내를 방문한 경험은 71.2%로 조사되었고, 본인인 고향을 방문한 경험 역시 85.2%로 조사되어 가족원의 이동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이러한 경향이 거주기간 10년 이내 집단에게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특징임. 또한 현재 고향에 가족이 있는 응답자 중 91.2%가 향후 고향가족 국내 초청 의사가 있다고 밝혀, 가족원의 국내 초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고향가족에 대한 송금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고향에 가족이 있는 응답자 중 63.6%가 지난 1년간 고향가족에게 송금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는 국내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남. 송금의 주요 용도로는 명절 등에 가족을

위한 선물 용도, 생활비 지원을 위해 송금한 경우가 각각 47.6%, 41.9%, 고향에 사업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구입용도는 9.1%로 조사됨. 국내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투자 성격의 송금도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데, 특히, 이러한 경향은 베트남, 중국보다는 필리핀 출신에서 더욱 두드러졌고, 국내생활을 10년 이상 한 장기체류자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고향에 가족이 있는 응답자 중 23.8%는 지난 1년 동안 거의 매일 연락을 했으며, 주 1회 이상 연락하는 경우도 43.2%로 나타나 정서적 교류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됨. 고향가족과의 연락은 국내거주기간이 오래되더라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락의 빈도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이들이 고향가족과 연락하는 이유로는 ‘일상적 안부를 묻기 위해’(64.8%) 연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고향이 그리울 때’(16.3%), ‘힘들거나 외로울 때’(8.4%) 순으로 나타남.
-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조사대상자 중 86.9%는 지난 3개월 동안 고향가족이 국내로 방문해 함께 살았거나 지난 1년간 고향가족과의 연락, 송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경험이 전혀 없는 이들은 13.1%에 불과하였음([그림 1]).



[그림 1] 여성결혼이민자의 고향가족과의 관계

- 이처럼 상당수 다문화가족은 국경을 넘어 가족원이 이동하고 경제적 자원과 정서가 교류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초국가적 가족 연계망이 가족원의 이주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며 결혼이민자 사이에서도 고향가족과의 관계 경험은 차이가 있음.
 - 분석 결과, 결혼이민자·귀화자 가운데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고향가족 초청 경험도 많고 원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출신국가별로는 한국계 중국 출신이 고향가족의 국내 이동이 활발했는데, 여기에는 한국계라는 특수성 상 재외동포 자격 등 보다 다양한 경로로 국내 이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임. 한국계 중국 출신을 제외하고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출신국가별로 다소간의 특징이 발견됨. 중국 출신의 경우 고향가족의 국내 이동과 국내 다문화가족의 고향 방문 등 쌍방향적인 가족원 이동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필리핀 출신에게는 가구원의 이동보다는 송금이나 연락이 고향가족과의 관계에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경향이 나타나 차이를 보임.
 - 가족구조와 자녀 돌봄 부담 역시 고향가족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조사결과, 가구 유형별로는 공통적으로 별거·이혼·사별 등으로 부부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 고향가족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향이 나타남. 특히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워야 하는 한부모 가구가 고향가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적 부양과 자녀양육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한부모의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인 동시에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에 비해 한국사회 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즉, 자녀 돌봄 부담과 이를 가족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고향가족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임.

〈표 1〉 국내거주기간별, 자녀연령별 여성결혼이민자의 고향가족과의 관계 경험
(단위: 명, %)

구분		3개월 이상 동거 경험, 생활비 지원용 송금, 주1회 이상 연락 中			전체
		경험 없음	일부 경험	모두 경험	
전체		70 (13.1)	395 (74.0)	69 (12.9)	534 (100.0)
국내거주기간	3년 미만	8 (9.3)	70 (81.4)	8 (9.3)	86 (100.0)
	3~5년 미만	11 (10.7)	76 (73.8)	16 (15.5)	103 (100.0)
	5~7년 미만	13 (11.5)	85 (75.2)	15 (13.3)	113 (100.0)
	7~10년 미만	19 (15.1)	87 (69.0)	20 (15.9)	126 (100.0)
	10년 이상	19 (17.9)	77 (72.6)	10 (9.4)	106 (100.0)
(X ² =15.457*)					
자녀연령	자녀 없음	10 (20.8)	36 (75.0)	2 (4.2)	48 (100.0)
	만 6세 이하 자녀	38 (10.2)	281 (75.3)	54 (14.5)	373 (100.0)
	만 6세 초과 자녀	22 (19.5)	78 (69.0)	13 (11.5)	113 (100.0)
(X ² =12.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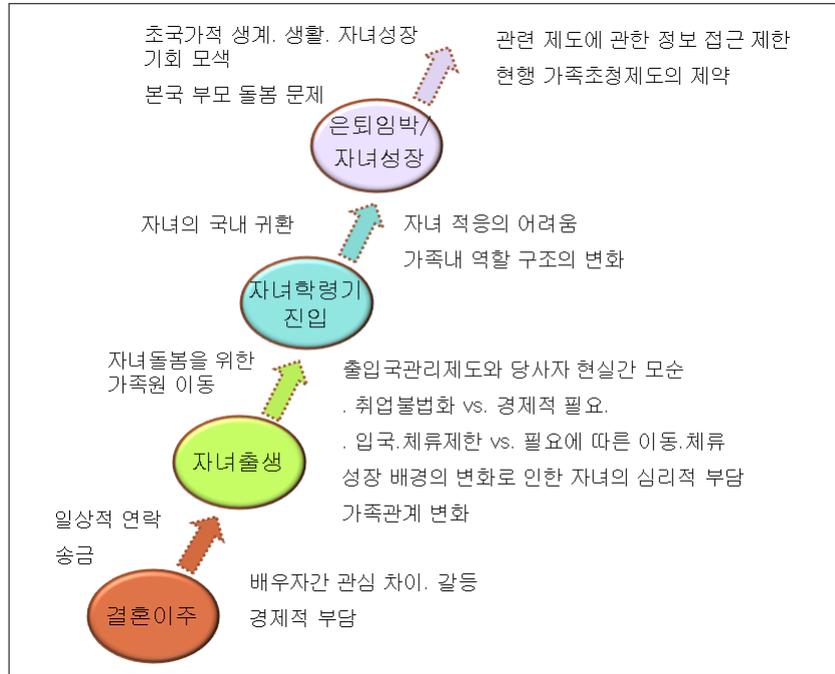
* : p ≤ .05

▣ 다문화가족의 초국가적 가족 연계망에 대한 관심과 쟁점의 이동

- 조사 결과, 다문화가족의 초국가적 가족연계망에 대한 관심과 쟁점은 가족 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2). 인터뷰 참가자들이 결혼이민자 출신가족과 맺는 관계에 있어 두드러지는 양상은 자녀의 탄생을 계기로 관계의 방향과 핵심 기제가 크게 달라지고 있는 부분임.
- 자녀가 태어나지 않은 시기 고향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송금과 같이 고향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편이 서로 시각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갈등적 상황에 놓이기도 함.
- 이러한 상황은 자녀의 탄생으로 크게 변화하게 되는데, 결혼이민자 출신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급격히 축소되며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편 사이에 존재하던 시각의 차이도 상당부분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 이제 국경 밖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의 축은 고향가족의 필요가 아니라 국내 다문화가족의 요구, 즉 자녀 양육과 관련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중심으로 이동하게 됨. 자녀양육을 위해 고향가족을 초청하게 되고, 특히 자녀 양육과 가사를 주로 책임지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가 건강 문제나 취업 등으로 인해 자녀양육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친정부모, 특히 ‘친정어머니’ 초청이 잦아지게 됨. 아예 주양육자 역할이 ‘친정부모’에게로 전환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는데, 친정부모가 국내에 와서 도와주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녀가 주양육자를 찾아 ‘외갓집’으로 가거나 ‘외할머니’와 함께 한국과 어머니 모국을 오가며 생활하는 경우도 발견됨.

- 자녀가 학령기에 진입하면 자녀가 공식교육에 진입하기 위해서 특정국가에 정착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다문화가족은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 [그림 2]에 나타난바와 같이, 고향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서 자녀양육으로 그 축이 이동했던 초국가적 가족 연계망은 이제 은퇴 이후의 삶과 자녀의 성장 기회라는 미래 가족생활의 관심사와 관련해 귀환이주를 용이하게 하는 통로로서 가치가 조망되기 시작함. 이러한 관심을 실현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본국 국적을 유지하고 본국에서의 생활 터전을 마련해가는 등의 준비도 진행되고 있음. 이밖에 이제까지는 초국가적 관계망에 대한 관심의 영역 밖에 있던 국가간 경제행위나 본국 부모의 돌봄 문제 역시 초국가적 가족 관계망을 추동시키는 요소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생겨나고 있음.



[그림 2] 다문화가족의 초국가적 가족 연계망에 대한 관심과 쟁점의 이동

■ 초국가적 가족연계망의 핵심 :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

- 자녀의 출생으로 인해 다문화가족의 초국가적 가족관계망의 작동 양상은 크게 변화함.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도 가족생활의 여러 측면 가운데 자녀양육에 있어 ‘어머니’의 고향가족 연계망이 집중적으로 동원되고 있음. 이처럼 고향가족이 국내에 들어와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경우 이외에 자녀가 ‘외가’로 가거나 주 양육자인 ‘외할머니’의 거처를 따라 어머니 모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생활하는 가족원의 이동이 본격화 됨.
- 설문 조사결과, 국내에서 출산을 경험한 여성응답자 475명 중에서 친정 가족이 출산 전후에 한국에 와서 산후조리를 해준 경험이 있다고 한 여성은 225명(47.4%)으로, 조사 참여자 중 약 절반 정도는 출산 직후에 친정가족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 고향가

족이 한국에 와서 자녀양육을 도와준 적이 있는 응답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주목할 만 점은 한국 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여성들은 대체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인다는 점으로, 10년 이상 거주한 여성들의 경우 고향가족들의 자녀양육 참여가 다소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난다. 이는 일종의 코호트 효과로 볼 수 있는데, 2000년대 초 이주한 여성에 비해 2000년대 후반에 이주한 여성들의 경우 친정가족의 한국 방문과 자녀양육 참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결혼이주가 점차 확대되면서 정책 서비스나 미디어의 보도 등에 힘입어 여성 이민자의 삶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고 친정가족과의 관계도 점차 용인하는 쪽으로 한국사회의 인식이 변화된 영향으로 해석됨.

-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어릴수록, 즉 6세 이하의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고향가족이 양육에 참여한 경험이 6세를 넘는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고향가족의 자녀양육 참여가 보다 일반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줌.

〈표 2〉 자녀 연령별 고향가족의 다문화가족 방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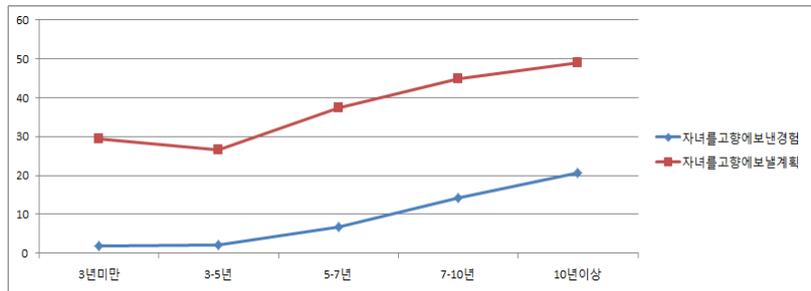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자녀연령 만 6세 이하	자녀 연령 만 6세 초과	합계
계		368 (77.6)	106 (22.4)	474 (100.0)
출산전후 가족방문	있음	192 (52.2)	33 (31.1)	225 (47.5)
	없음	176 (47.8)	73 (68.9)	249 (52.5)
양육기 가족방문	있음	208 (56.5)	33 (31.1)	241 (50.8)
	없음	160 (43.5)	73 (68.9)	233 (49.2)

■ 한국 생활 장기화에 따른 초국가적 가족연계망의 재구성 전망

-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거주기간별로 초국가적 가족 연계망의 세부 양상을 비교해보면, 국내 거주 초기에는 일상적 연락과 경제적 지

원이 고향가족과의 관계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가 자녀의 출산과 함께 영유아기 자녀 양육을 위해 고향가족을 초청, 동거하는 방향으로 가족 연계망의 핵심 축이 이동함. 그런데, 고향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다문화가족의 관심은 여기에 그치지 않으며 자녀유학이나 은퇴 후 생활을 염두에 두는 방향으로 초점이 전환됨.



[그림 3] 여성결혼이민자 국내거주기간별 자녀를 고향에 보낸 경험과 향후 계획

● 조사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거주기간이 길어지고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해 키우면서 점차 고향가족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한국 내에서 구성된 가족관계의 틀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전제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오히려 최근 들어 초국가적 가족 연계망이 활성화됨에 따라 고향가족과의 연계망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생활을 하면서 관계가 다소 소원해졌던 이들 사이에서도 은퇴 후 생활이나 자녀의 교육기회와 같은 가족의 주요 관심을 구현하는데 있어 초국가적 가족 연계망이 지닐 수 있는 가치가 새롭게 조명됨. 한국생활이 길어짐에 따라 제기되는 새로운 요구를 중심으로 초국가적 가족 연계망이 재생산되면서 상당수 다문화가족의 삶의 일부로 계속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떠오르는 관심사: 자녀유학, 은퇴 후 생활, 본국 부모 돌봄

● 다문화가족 자녀 중에는 ‘외국인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라거나 아

예 어머니 고향으로 가서 사는 등 초국가적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이러한 경향, 특히 자녀를 어머니 모국으로 보내는 경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 한국에서 출산한 자녀를 여성이민자 고향에 보내서 일정기간 머무르게 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자녀가 있는 여성 475명 중 이러한 응답은 49명으로, 10명 중 1명 정도로 나타남. 한편, 앞으로 자녀를 고향에 보낼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여성응답자 10명 중 4명 꼴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중국출신 여성들은 절반 이상이, 필리핀 출신 여성들은 절반 정도가 자녀를 고향에 보내겠다고 응답하여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 귀환 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앞으로 모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34.5%로 나타남. 즉, 여성결혼이민자 3명중 1명 정도는 모국으로의 역이민을 고려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할 때,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적어도 일부는 앞으로 결혼이민자 모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런데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국내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귀환계획이 줄어들기 보다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점이 주목됨. 이는 한국에서 오래 생활할수록 한국 문화에 적응하게 되고 따라서 고향과의 연계망이나 귀환의 가능성이 더 감소할 것이라는 이른바 ‘정착(혹은 동화) 가설’과는 부합되지 않는 결과임. 또한 자녀가 없는 응답자보다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 그리고 자녀의 연령이 더 높은 응답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귀환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 출산이 한국에서의 가족관계를 강화하고 이민자의 정착을 강화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념 또한 현실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다문화가족의 가족주기 뿐만 아니라 이민자 원가족의 가족주기 변화도 초국가적 가족연계망의 방향을 전환시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초국가적 가족에 관한 해외 연구에 따르면, 자녀 돌봄과

함께 부모의 노후 돌봄 역시 가족원들이 초국가적 차원에서 함께 다루어가는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꼽히는데, 국내에서는 그동안 관심영역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음. 인터뷰 결과, 여성결혼이민자들 중 일부는 이미 친정 부모의 노후생활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부모가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중국에서 한자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점에 태어난 30대 중반의 ‘외동딸’ 결혼이민자들에게는 부모 노후 돌봄 문제가 이미 절박한 문제로 조사됨.

〈표 3〉 출신국가별 모국 귀환 계획 이유

(단위: 명, %)

	베트남	필리핀	중국	합계
계	50 (100.0)	54 (100.0)	80 (100.0)	184 (100.0)
자녀교육을 위해	5 (10.0)	25 (46.3)	27 (33.8)	57 (31.0)
취업/사업 등 경제적 이유로	5 (10.0)	7 (13.0)	14 (17.5)	26 (14.1)
은퇴 후 노후생활을 위해	29 (58.0)	16 (29.6)	16 (20.0)	61 (33.2)
친정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10 (20.0)	5 (9.3)	20 (25.0)	35 (19.0)
기타	1 (2.0)	1 (1.8)	3 (3.8)	5 (2.7)

▣ 생활의 안정성과 초국가적 가족 연계망에 대한 관심의 분화

- 다문화가족 사이에서는 결혼이민자 모국이 줄 수 있는 기회가 유인 요인(pull factor)으로 작용하여 초국가적 가족 연계망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민자와 그 자녀에게 배타적인 한국사회의 상황이 일종의 유출 요인(push factor)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전자의 경우, 다문화가족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구현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초국가적 가족연계망에 접근하는 경우를 의미함. 그러나 이러한 관심을 실현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다문화가족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실질적 자원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큼.

- 이민자로서 한국사회에서 직면하는 부적응과 차별 문제는 다문화가족으로 하여금 국경 밖 가족관계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대표적인 유출 요인으로 꼽힘. 다문화가족의 미래 계획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결과, 차별 경험이 크고, 문화적 유능감이 낮을수록, 귀환에 대한 관심이 크고, 본인의 귀환과 자녀를 본국으로 보낼 계획에 더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초국가적 가족 연계망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편의 적극성
 - 다문화가족의 핵심 구성원인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는 결혼이민자 원가족과의 관계에 있어 다소 다른 위치에 있으며 이러한 점이 초국가적 가족 연계망의 구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설문조사 결과, 고향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자녀양육을 위한 고향가족 동원에 있어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연계망을 구동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여성결혼이민자 자신이 인적자원과 경제적 자원을 갖고 있는 경우 가족생활에 대한 의사결정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으며 가족 초청에 드는 부담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비교적 자유롭게 고향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이 높고 자녀의 모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한 귀환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남. 앞으로는 자녀교육과 관련해 초국가적 가족 연계망을 동원하는데 있어 여성결혼이민자의 핵심적 역할은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이에 비해, 국경 밖의 ‘처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자녀양육, 교육과 관련해 초국가적 가족연계망을 동원하는데 있어서 한국인 남편의 위상은 그다지 부각되지는 않았음. 하지만 ‘친정’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요구만으로 고향가족과의 관계망이 추동되는 것은 아니고, 점차 부부가 가족생활에서 각자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국

경 밖의 결혼이민자 원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켜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정책제언

제안1) 초국가적 연계망을 고려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접근

- 다문화가족의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고향가족과의 관계를 포함한 초국가적 시각이 필요함. 특히, 국가 중심의 체계 속에서 국경을 넘어선 가족 연계망을 둘러싸고 다양한 모순이 제기되고 초국가적 삶을 살고 있는 고향 부모나 여성결혼이민자, 그들의 자녀 등 주요 행위자들이 혼란과 모순에 직면해있는 바는 관련 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임.
-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에는 결혼이민자 고향가족의 참여가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관련 제도가 다문화가족의 현실과 괴리된 부분이 적지 않으며 관련 서비스에서도 초국가적 가족 연계망 속에서 살고 다문화가족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다른 한편,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다문화가족 사이에서 한국사회에서의 빈곤이나 차별 문제, 결혼이민자의 부적응 문제 등 정착과 사회통합의 한계로 인해 국경 밖으로 관심을 돌리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정책 차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임. 이는 한국사회의 일종의 유출 요인(push factor)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정착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차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다문화가족이 국내에서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통합 정책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제안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관련 제언

- 결혼이민자 원가족의 동거와 자녀양육 역할 가능성을 고려한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정비
 - 연구결과, 다문화가족 가운데 상당수는 결혼이민자 원가족이 함께 살면서 자녀양육이나 가사 등 가족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 원가족의 존재가 다문화가족의 일상생활과 가족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에서는 이들의 존재와 영향력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자녀양육과 관련된 각종 정보제공이나 교육은 ‘어머니’인 여성결혼이민자 이외에 실질적인 주 양육자인 본국 가족원에게도 개방하는 방안(예, 교육, 상담, 통번역 서비스 등) 등이 고려될 수 있음. 이 경우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본국 가족원은 한국어 수준 등으로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큰 만큼, 통번역 서비스가 반드시 동반될 필요가 있음.
 - 또한 결혼이민자 고향가족과 함께 살 경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특히 의료비 부담이 심각하다는 점은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 연구에서 실시한 인터뷰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방문동거비자로 변경해 외국인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로 인해 심각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관련 콜센터 등을 통해 초청 가족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과 절차 등을 안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초국가적 자녀양육의 혼란, 부작용 해소를 위한 지원 강구
 - 현재 다문화가족의 삶에 있어 초국가적 가족관계망의 영향력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자녀양육에 관한 것으로, ‘외할머니’를 비롯한 결혼이민자 원가족원이 국내 혹은 본국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 경우,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이 절박한 상황에서 자녀양육 역할을 지원해 줄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어머니 모국에서의 성장 경험이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
 - 그런데, 한편으로는 ‘외국인 조부모’의 양육 참여나 한국사회 외부에서의 성장 경험이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팽배해 있는 상황으로 자녀양육을 고민하는 부모들로서도 상당한 혼란에 직면해 있음.
 - 따라서 초국가적 자녀 양육을 고려하고 있는 부모들을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이 제공된다면 부모들의 혼란을 줄이고 자녀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초국가적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의 가족관계나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주 양육자 역할 회복 및 학부모 역할 준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 등이 초국가적 자녀 양육의 부작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문화가족의 초국가적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제언
 - 고향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가족 초청, 동거 비용 등 초국가적 가족 연계망을 유지, 가동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경제적 부담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고향가족과의 관계를 통해 한국사회 내부에서는 찾기 어려운 소득원이 제공되기도 함. 다문화가족 사이에서는 결혼이민자 고향에서 그곳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거나 한국과 모국에서 각각 서로 연계된 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음. 그리고 아직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형태의 사업 경영에 대한 관심은 매우 크며, 특히 한국인 남편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

-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러한 관심을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정보, 즉 본국에서의 소규모 투자 결정에 요구되는 정보나 사업 운영 관련 각국 제도에 대한 정보 등이 지극히 빈약한 상황으로, 실제 고향가족과의 연계를 통한 초국가적 물품 판매나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 이들조차 관련 제도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의 현실에 적합한 분야를 중심으로 소규모 해외 투자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제공하거나 여성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의 일환으로 초국가적 물품 판매나 구매 대행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는 것도 필요함.

제안3) 출입국관리제도 관련 제언

- ▣ 당사자들의 다양한 가족 초청 요구와 국제사회의 기준을 고려한 대안 모색
 - 자녀양육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가족 초청 제도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함. 더불어 초청 가족의 국내체류기간이 최대 '4년 10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재검토가 필요함. 물론, 이러한 논의과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끌어 나가야겠지만, 가족통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시각을 고려한 전향적인 접근이 모색되어야 함.
 - 현행 가족 초청 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 기능과 관련된 가족 초청에 대해서는 비교적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 그 외 목적과 관련된 가족 초청에 대해서는 지극히 통제적 접근을 유지하고 있음. 그런데, 당사자들에게는 자녀양육 이외에도 가족을 초청해 장기간 함께 살고자 하는 다양한 요구가 발생하고 있음. 이 가운데 부모 노후 돌봄 문제는 국내에서 크게 논의된 바 없었지만,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다문화가족, 특히 중국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매우 절박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자녀양육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가족 초청 제도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함. 물론 가족 초청의 확대는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논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이 과정에서도 당사자의 요구나 이주민의 가족통합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본 시각¹⁾이 무엇보다 핵심적인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초청 가족의 취업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

- 가족 초청에 관한 또 하나의 쟁점은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자녀양육을 목적으로 초청한 가족의 장기체류는 허용하면서도 이들의 취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있음. 국내 다문화가족이나 고향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가족 초청과 이들의 장기간의 한국생활, 귀국 등에 드는 제반 비용을 국내 다문화가족이 부담하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경우 고향가족 스스로 별어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조사 결과, 실제 초청가족 중에는 자녀양육을 하면서도 남는 시간을 이용해 취업하는 사례도 발견됨.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러한 경우나 사실상 취업을 목적으로 초청해 취업에 전념하는 경우 모두 ‘불법취업’으로 분류되고 있음. 결국 다문화가족이나 이들이 초청한 고향가족 모두의 현실과 맞지 않은 제도로 인해 ‘불법’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도 ‘결혼이민

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the Members of Their Families) (1990년 채택, 2003년 발표) 제44조에서는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강조하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뿐 그 외의 가족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동등한 대우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05.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igrant Workers and Its Committee. Fact Sheet No. 24(Rev.1) p.37). 현재 한국은 해당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협약의 이러한 기본 방향은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자 초청 가족의 취업 허용 추진'(외국인정책위원회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3-2017) p.48),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음.

- 이는 전반적인 외국인근로자 제도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섬. 다만,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보면,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고향가족에게는 일정 부분 취업을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는 교육을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유학생에게 일정 시간의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자녀양육을 목적으로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본국 가족에 대해서는 시간제 취업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취업 가능 직종을 지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4 기대효과

- 다문화가족의 초국가적 가족연계망에 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 촉발 및 관련 정책의제 구체화
- 이민자 원가족의 초청 및 한국 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개입 방안 모색
- 초국가적 자녀양육 현실을 반영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재정비

2) 유학(D-2)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학위과정에 따라 주당 20-30시간 이내의 시간제 취업이 허용하고 단순노무 등 취업 허용분야를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14.9.1.) pp. 23-24).

참고자료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05.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igrant Workers and Its Committee.
Fact Sheet No. 24(Rev.1)

외국인정책위원회.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3-201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14.9.1.)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국무조정실(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